

## 질의 · 서면 답 변 서

질의위원	신 교 선 의원	소 속	평 창 군 의 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임업경영과장)	일 자	질의 : 1999년 11월 29일 답변 : 1999년 11월 29일
회 의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 감사(감사3일차)		
<p><b>【 질의요지 】</b></p> <p>① '98 평창군 축산업 협동조합 및 대화면 하안미리5리 이상국과 맺은 계약서 ?</p> <p>② (주)보광에게 신용허가한 계약서 및 사용료 부과 현황 ?</p>			
<p><b>【 답 변 】</b></p> <p>○ 평창군 축협에 사용 허가한것도</p> <p style="margin-left: 20px;">- '95. 7. 5일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도 사용료는 561,840원임.</p> <p>○ 대화면 하안미 5리 이상국에게 사용 허가한것은</p> <p style="margin-left: 20px;">- '88. 7. 27일 동마을 임정식이 방목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다 포기하여 관리이전된 것으로 '99년 사용료는 498,020원임.</p> <p>○ (주)보광에 사용 허가한것은</p> <p style="margin-left: 20px;">- '96. 3. 13일 스키장 및 골프장 시설부지로 사용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도 사용료는 44,982,930원임.</p>			
<p>붙 임 : 사용허가 계약서 및 사용료 부과 공문 사본 각 1부. 끝.</p>			

원본대조필  
 직점원서기 생명인주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 (0374) 30-2426 / FAX 33 - 6356  
 처리부서 : 임업경영과 (본청 4층) 과장 : 이영식 담당 : 함경호 실무자 : 조익형

문서번호 임경 52330 - 1524  
 시행일자 1998. 12. 19

받 음 대화면 하안미 5리 45 번지  
 참 조 이 상 국 귀하

취 급		군 수
보 존	년	가관공
부군수	전 권	
과 장	2564	담당 함경호
기 안	조익형	
		협조

제 목 균유림 대부.사용허가 기간연기

1.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5리 45 번지에 거주하는 이 상 국으로 부터 균유재산 대 부및 사용허가 기간연기 신청하신 건에 대하여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및 제13 조. 초지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을연기 하오니 불임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 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와 관련하여 불법양도및 산림형질변경등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는 사례 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1) 균유재산 사용허가 조서 1 부
- 2) 사용허가서및 허가조건 1 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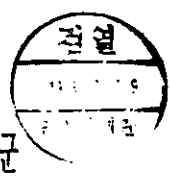


( 제 2 안 )

받 음 : 대화면장  
 제 목 : 같은건 통보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5리 45 번지에 거주하는 이 상 국에게 불임과 같이 균유 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기 하였기 통보하오니 균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균유재산 사용허가 조서 1 부 끝.



평 창 군 수

○ 균 유 제 산 대 부(사용허가)조서(기간연기)

원본대조필  
 각청원서기 성명 

사용허가 번호	대 부 (사용) 년월일	소 재 지			지목	지적	대 부 사용허가 면적	용 도	대 부 사용허가 기간	수 대 부 (사용허가) 자		비 고
		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8. 12. 19	대화 면	하안 미리	산 205-2	임야		159.937	초지조 성	99. 1. 1. 2003.12.31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5 리 45 번지	이 상 국	

군 유 재산 (유상.무상) 사용 허가서

원본머조결		
각	원서기	성명
		이 상 국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하안머리 산 205 - 2 번지
- . 면적 : 159.937 ㎡
- . 사용목적 : 초지조성

○ 신청인 주소 : 평창군 대화면 하안머리 5리 45 번지  
성명 : 이 상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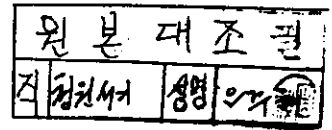
1998년 12 월 15 일 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1998년 12 월 19 일

평            창            군



# 허 가 조 건



- 제 1 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초지조성으로 한다.
- 제 2 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99년 1 월 1 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3 조 (사 용 료) 사용료는 금 별도부과한다 .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 4 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 제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 7 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 8 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 9 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 11 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 12 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의무 불이행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7 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 18 조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본 허가 재산에는 본군의 관리사 창고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9 조 (연고권 배제)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다.
- 제 20 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군결정에 의한다

평 창 군

우 232 - 8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2 / 전화 (0374 - 30 - 2426) / 담당 김진한

문서번호 산림 52330 - 110P  
 시행일자 1996. 11. 14.

( 제 1 안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균유임야 대부 계약체결(방목장)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1	방 목 장
과 장	김진한	
계 장	김기영	
기안	김진한	협조

X. 조속임야 구유보급 시행함

1. 대화면 하안미리 45번지 거주 이상국으로부터 대화면 하안미리 산221-8번지의 14필지 면적127,179㎡에 대한 균유임야 대부 신청건은,
2. '88년 7월 27일부터 '98. 12. 31일까지 대화면 하안미리 469번지 임정식 이가 총 16필지에 면적146,913㎡에 방목장 목적으로 균유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동리 산266-7번지 면적19,734㎡은 남겨놓고 대부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3. 동리 산266-7번지에 대하여는 임정식으로 부터 변경계약 체결토록하고,
4.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체결하여 효율적인 균유재산(임야)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5. 대부 계약대상 내역

소재지			지 적	신청(계약)면적	비 고
면	리	지 번			
계		15필	127,179	127,179	임정식 => 이상국
대화	하안미	산221-8	6,051	6,051	
"	"	산221-9	9,126	9,126	
"	"	산246	39,993	39,993	
"	"	산246-3	808	808	
"	"	산246-4	2,929	2,929	
"	"	산247-2	10,566	10,566	
"	"	산247-3	12,838	12,838	
"	"	산247-4	3,753	3,753	

소 제 지			지 적	신청면적	비
면	리	지 번			
대화	하안미	산247-5	5,827	5,827	
"	"	산247-6	395	395	
"	"	산266-4	13,023	13,023	
"	"	산266-5	8,715	8,715	
"	"	산266-6	5,009	5,009	
"	"	산246-2	2,221	2,221	
"	"	산247	5,925	5,925	

공공기관  
고  
김진한

붙임 : 공유임야 대부계약서 1부. 끝.

( 제 2 안 )

받음 : 대화면 하안미리 45번지 이상국

제목 : 같은건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유임야 대부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원의대로 대부 계약체결코자 하니, 대부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계약을 빙자하여 불법 산림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끝.

( 제 3 안 )

받음 : 대화면 하안미리 임정식

제목 : 공유임야 대부 변경 계약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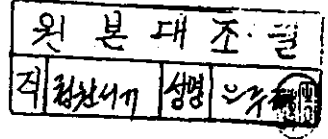
귀하가 제출하신 대화면 하안미리 산221-8번지의 14필 면적127,179㎡에 대한 포기는 제출되어 등리 거주 이상국과 대부 계약체결되나 등리 산266-7번지 면적19,734㎡에 대하여는 귀하가 계속대부코져 하는것으로 조속히 변경계약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 안 )

받 음 : 대화면장

제 목 : 같은건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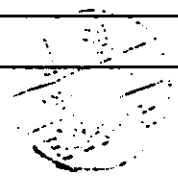


1. 대화면 하안미리 산221-8번지의외15필지 면적146,913㎡ 경창군유 임야에 방목장 목적으로 등리 산469번지 거주 임정식이가 대부 계약체결 사용하던중 등리 산266-7번지 면적 19,734는 남겨놓고 대부포기서를 제출하므로, 등리 45번지 거주 이상국과 대부 계약체결 되었기 통보하니 균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대부(명의변경) 계약 대상지 내역

소 재 지			지 적	신청면적	비 고
면	리	지 번			
계		15필	127,179	127,179	
대화	하안미	산221-8	6,051	6,051	
"	"	산221-9	9,126	9,126	
"	"	산246	39,993	39,993	
"	"	산246-3	808	808	
"	"	산246-4	2,929	2,929	
"	"	산247-2	10,566	10,566	
"	"	산247-3	12,838	12,838	
"	"	산247-4	3,753	3,753	
"	"	산247-5	5,827	5,827	
"	"	산247-6	395	395	
"	"	산266-4	13,023	13,023	
"	"	산266-5	8,715	8,715	
"	"	산266-6	5,009	5,009	
"	"	산246-2	2,221	2,221	
"	"	산247	5,925	5,925	

평 창 군 수



원본폐조권  
 직영채세기 상행 2차  
 (Seal)

군유임야대부상황보고

('96. 11. 14일)

구분	수대부자	대부기간	대부내역		용도	비고
			필수	면적		
당초	대화면 하안미리 임정식	'88. 7. 27 ~ '98. 12. 31	16	146,913㎡	방목장	
변경	대화면 하안미리 이상국	'96. 11 ~ '99. 12. 31	15	127,179㎡	"	→이전
잔여분	대화면 하안미리 송동호	'96. 11 ~ '99. 12. 31	1	19,734㎡	"	→안정

#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위 본 대조 필  
 직 청원서 생생 33

##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대부면적	비고
—	별칭	과지박	모역	장소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평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방목장

제2조 대부기간 96년 11월 14일부터 ( 일간)  
 97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대부료연액 원경, 다만, 월할 재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르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3조 또는 제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대부받은 잠중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분재산에 시효완성의 시효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8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용의 대부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해제할 수 있다.

원본대조필		
김영희	생	인

1. 이혼, 이혼을 부인 하는 임의사업에 필요한 때
2. 용의 권리를 1년 유효기간이 경과하고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분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에 착수할 수 없도록 같은 인정기간
3. 용은 대부분재산 관용재산상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서는 아니므로 기
4. 전항의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기부 책임하거나 자진철거 하되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다.
5.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7. 용이 관할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8. 같은 조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①기부 용의 부 계약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기부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용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같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상의 부담은 이를 면한다.

제9조 제8조 제7조 단서의 배상액은 같은 조항의 의하고 용은 이를 관할처분의 이익신장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①은 계약 기간중에 용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관할처분을



"천혜자원 우리경창 함께가꿀 미래의 땅"  
**평 창 군**

원본대조필  
 직권행위 생략

우 232 - 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6리 210-2 / (0374) 30 - 2426 전송 33 - 6356  
 처리부서 : 산림과 산림지도계 (본청 3층) 계장 : 엄기종 담당 : 조익형

문서번호 산림 52330 - 1190

시행일자 1997. 8. 14.

( 제 1 안 )

받 음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참 조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전 1	8/12
과 장	06204	
기안	2/386	산림지도계장 협조

제 목 균유림 대부(사용허가)기간연기

1.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균유림 사용허가 기간연기 신청건에 대하여 내용검토 및 현지 조사한바 원의 타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및 제 13조 규정에 의거 균유림 사용허가 기간연기 하오니 불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조건을 빙자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균유림 대부(사용허가)허가 조서 1 부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 부 끝.

( 제 2 안 )

받 음 : 방림면장

제 목 : 같 은 건

평창읍 하리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에게 붙임과 같이 균유림 사용허가 기간연기 되었기 통보 하오니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균유림 대부(사용허가)허가 조서 1 부 끝.



**평 창 군 수**

○ 군 유 임 야 대 부(사용) 허 가 조 서

원 본 대 조 직  
 직 장 원 서 기  
 총 장 김 기 철

사용 허기 번호	대 부 년 월 일	소 제 지			지 목	지 적	사용허가 면 적	용 도	사 용 기 간	수 허 가 지		비 고
		면	리	지 면						주 소	성 명	
	92. 7. 5.	방 뒤	방 뒤	산 793 -1	임 야	509. 851	210194㎡	초 지	92 7. 5. 97. 7. 4.	평창축산임위동조합정	이 상 국	영주허기
	97. 8. 卍	방 뒤	방 뒤	산 793 - 1	"	"	"	"	97. 7. 5 2002 7. 卍	평창축산임위동조합정	이 상 국	규외기간 인기허기

#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신청인	정원씨	오주현

재산의 표시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793-1 번지  
사용허가면적 : 210.194 m

신청인 주소 : 평창군 경창읍 하 리

성명 :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1997 년 8 월 7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1997. 8.

평 창 군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군 직원의 인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대부한 군유림에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관리사 및 창고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연고권 배제)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군의 결정에 의한다.

경주시

경주시

군유림대부(사용허가)	조사년월일 1997. 8. 7
신청지 현지 조사서	조사자직성명 김성기 김성기 (인)

1. 출원사항

신청인	① 성명 (상호)	평강군 평강읍 평강리 이삼근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평강군 평강읍 하리 121-1번지					
신청구분	대부(사용)	④ 출원임야 소재지	평강군 평강리 손가3-1번지	⑤ 면적	50.851 m <sup>2</sup>	⑥ 신청면적	210.194 m <sup>2</sup>
	연가	⑦ 허가임야 소재지	평강군 평강리 손가3-1번지	⑧ 면적		⑨ 대부면적	210.194 m <sup>2</sup>
		⑩ 허가년월일	97. 7. 4	⑪ 당초 기간	1992. 7. 5. 부터 1997. 7. 4. 까지 (5) 년간	⑫ 연기 기간	1997. 7. 5. 부터 2002. 7. 4. 까지 (5) 년간

2. 입항

① 소재지	② 지번	③ 면적	④ 대부면적	⑤ 무입목지	⑥ 재적	⑦ 입 목 지				⑧ 흉고직경	⑨ 수고	⑩ 수경	⑪ ha당		⑫ 총계		⑬ 입목도	⑭ 적요	
						구 분		수종	면적				본수	재적	본수	재적			
						치수지	성립지												
평강군 평강리	121-1	50.851	210.194		7	조리	조리	조리	조리										
						경	노	강	96264	경지(공박)			계	강					

3. 재산의 종류	(행) 경 · 보존 · 잡종	4. 국유림종류	요존 · 불요존
5. 제한사항유무	없음		
6. 대부·허가조건외반유무	없음		
7. 기타사항	조리조리조리 기반에서 하여 사용목적상임이 있음		

#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원본대조필  
 직책: 청원서, 생명, 2부헌

우 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 / ☎ (0374)34-2303 ~ 5 / FAX 34-2306

문서번호 : 평창(생축)31802-200

시행일자 : 1997. 8. 6.

경유 :

발음 : 평창군수

참조 : 축산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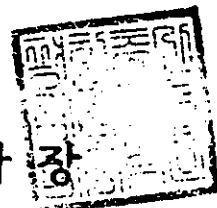
선결	나경	0626/97	지시	
점	일자		결	
수	번호		계	가 28
처리과			공	
담당자	2/3/86		람	

제목 : 군유 재산 대부 연기신청.

당 조합에서 군유재산 방림면 방림리 산 793 - 1번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대부만료일이 도래되어 대부연기 신청을 붙임과 같이 신청 합니다.

붙임 : 군유림 대부 신청서, 법인인감, 사업계획서 각1부. 끝.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외본대조필  
 제청서기 상행도기

(별지제31호 서식) (산림법 시행규칙제49호 서식)

군유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부 <input type="checkbox"/> 식용허가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2) 명명 :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이상국		(3) 사업자등록번호 : 225-82-01604
	(4)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 - 1 번지		
신청임야	(5) 소재지	(6) 지번	(7) 지적 (8) 대부. 허가면적
	방림면방림리 산793-1	산793-1	210.194 m <sup>2</sup>
(9) 대부. 허가번호 및 년월일	제 호		(10) 용도 목축용
(11) 중 전 대부. 허가 기간	1995년 7월 5일 ~ 1997년 7월 4일까지		(12) 연 기 신청기간 1997년 7월 5일 ~ 년 7월 4일
(13) 사유	군유림(목축용)대부 만료로		
<p>산림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1997 년 8 월 6 일</p> <p>신청인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이 상 국(인)</p> <p>평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수 수 료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없 습	

국립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0-2423 / 담당 조 의 형

문서번호 산림 52330 - 569

시행일자 1998. 5. 9.

( 제 1 안 )

발 음 내 부 결 재

참 조

취급		군	수
보존		76272	
부군수	전 결		
과 장	오경희	산림지도계장	
기안	조 의 형		

제 목 균유림대부 명의변경 계약체결 (골프장.스키장)

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번지 거주하는 (주) 보광 대표이사 홍 석규로부터 봉평면 면은리 999-3 번지의 4필지 면적 268,086 ㎡ 균유림 대부계약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변경 신청이 있어 서류 검토한바.

2. 당초 대부계약자인 보광환경개발 (주) 대표이사 오 광열 사임으로 98. 1. 22일자로 대표이사 홍 석규로 변경되어 대부계약 명의변경 신청한것으로 원의타당하기에 명의 변경 대부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붙 임 : 가. 균유림대부 명의변경 계약 조서 1 부

나. 균유림 대부계약서 1 부

라. 경계표주 (안) 1 부



( 제 2 안 )

받는곳 : (주) 보광 대표이사 홍 석 규

제 목 : 같 은 건

1. 귀하께서 민원 제1906.1907호 ( 98. 5. 8 )로 균유림 대부 명의변경 신청한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한바 원의타당하기에 명의변경 대부계약 체결 하오니.

2. 대부계약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본 대부계약을 빙자하여 불법산림형질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32-2011-8 담당 조 익 형 / 전송 30-2423



공인인증서

붙임 : 군유재산 대부계조서(명의변경) 1 부  
대부계약서 1 부  
경계표주안 1 부 끝.

( 제 3 안 )

받는곳 : 봉평면장

제 목 : 군유림 대부계약 통보(명의변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번지 거주하는 (주) 보광 대표이사 홍 석규에게  
붙임과 같이 군유림대부 명의변경 계약체결 하였기 통보하오니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유림 대부계약조서 (명의변경) 1 부 끝.

공인인증서

평 창 군 수

○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 조서 (명의변경)

원본대조필  
 직권필서 성명 오주환

사용 허가 번호	대 부 (사용) 년월일	소 재 지			지목	지적	대 부 사용허가 면적	용 도	대 부 사용허가 기간	수 대 부 (사용허가) 자		비 고
		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8. 1. 16	봉평 "	무이 리 민은 리	산 268	임야		37,576	피블릭 골프장 골프장	98. 1. . 2000. 12. 31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723 보광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오 광 열	당 초	
			999-3	"		1,828						
1003-2			"		20,050							
1072-2			"		15,828							
96. 3. 12	봉평	무이 리	산 268	"		192,804	스키장	96. 3. 13 98. 12. 31				
98. 5.	봉평 "	무이 리 민은 리	산 268	임야		37,576	피블릭 골프장 골프장	98. 1. . 2000. 12. 3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빈지 (주) 보광	대표이사 홍 석 규	빈 경	
			999-3	"		1,828						
1003-2			"		20,050							
1072-2			"		15,828							
	봉평	무이 리	산 268	"		192,804	스키장	96. 3. 13 98. 12. 31				



#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의결  
=정원세 상 우주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대부면적	목 적	비고
계양동 방산동 11리	4-268	임야	230.395㎡	315.15㎡	방산동임야	
" " 방산동리	099-3	"	1828"	1828"	방산동임야	
" " "	1003-2	"	20050"	20050"		
" " "	1012-2	"	15828"	15828"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평창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방산동임야 및 방산동리로 한다
- 제 2 조 대부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월간)
- 제 3 조 대부료연액 계정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 4 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 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 조 또는 제 626 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제 6 조 을은 대부받은 잠중재산에 대하여 영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 8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
  2. 을이 계약후 1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때

1908년 5월 5일  
 임대자 (갑) 임차자 (을)

3. 을은 대부분은 잠중재산 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기 설치된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갑에 기부채납하거나 자진철거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함
4. 제 4 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갑으로부터 대수요구를 받고 대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①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 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 9 조 제 8 조 제 7 조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 10 조 ① 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분채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 월전에 다시 대부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이 본 계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가진다.

1908년 5월 5일  
 임대자 (갑) 평 장 군  
 임차자 (을) (부) 박영 아 이 다 장 의 차

#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원본과 조결  
 직권원서기 성명 인주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대부면적	목 적	비 고
평안도 평안시 죽이시	문 268	임야	25038.0 <sup>㎡</sup>	1128.4 <sup>㎡</sup>	스키장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평창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스키장으로 한다
- 제 2 조 대부기간 1996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 9개월간)
- 제 3 조 대부료연액이 100만원 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 4 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 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 조 또는 제 626 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제 6 조 을은 대부받은 잡종재산에 대하여 영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3.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 8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때
  - 2. 을이 계약후 1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111  
 김원세 영인도장

3. 물은 대부분은 잠중재산 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기 설치된 영구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에 기부채납하거나 자진철거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함
4. 제 4 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물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의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물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갑으로부터 배수요구를 받고 배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① 기타 물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만 물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 호의 경우에는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는 대부분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 9 조 제 8 조 제 7 조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물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 10 조 ① 본 계약 기간중 물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는 대부분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물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물"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제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부기간 만료후 물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 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물이 본 계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물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물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가진다.

1998년 5월 9일

임대자 (갑) 명 창 군  
 임차자 (물) (주) 박영 매도 3/3

